

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	2000. 11.
제 출 자	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- 21세기를 이끌어갈 음악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향수욕구를 충족시키며 지방문화예술 기반 구축과 향토 음악 저변확대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립예술단(시립합창단,무용단, 극단, 소년소녀합창단)에 “시립청소년관악합주단” 신설
- 구성 : 지휘자1인과 단원80인 이내
- 위촉연령 : 초등학교4학년부터 대학생
- ※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제 2조 및 제3조, 제10조

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조중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다음에 “시립청소년관악합주단 (이하 “관악합주단”이라 한다)”을 신설한다

제 3조 제1항중 소년소녀합창단 다음에 “관악합주단”을 신설한다
제2항중 100인이내 다음에 “관악합주단은 지휘자1인과 단원80인이내”를 신설한다.

제10조 제1항중 고등학교 3년 다음에 “관악합주단은 초등학교 4학년부 터 대학생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 2 조 (설치) 예술단에 시립합창단 (이하 “합창단”이라 한다.), 시립무용단 (이하 “무용단”이라 한다.), 시립연극단 (이하 “극단”이라 한다.), 시립소년소녀 합창단(이하 “소년소녀합창단”이라 한 다.)-----〈신설〉----- -----을 둔다	제 2 조 (설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시립청소년관악합주단</u> (이하 “관 악합주단이라 한다)-----
제 3 조 (구성) ① 제2조의 규 정 에 의한 합창단, 무용단, 극단, 소년소녀합 창단----〈신설〉----(이하 “각단”이라 한 다)의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	제 3 조 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, <u>관악합주단</u> ----- -----
② 합창단은 지휘자1인과 단원 60인 이내, 무용단에는 현대·한국·발레 등 으로 구분 구성 할 수 있으며, 안무자 각 1인과 단원 80인 이내, 극단은 연 출자 1인과 단원 30인 이내, 소년소녀 합창단은 지휘자 1인과 단원 100인 이내,-----〈신설〉----- -----로 각각 구성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관악합주단은 지휘자1인과 단원 80인이내</u> -----,
제4조~제9조(생략)	제4조~제9조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 10 조 (위촉 연령과 기간) ① 지휘자·안무자·연출자를 제외한 합창단, 무용단, 극단의 단원 위촉 연령은 50세 이하의 자로하며, 소년소녀합창단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년,-----〈신설〉-----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.	제 10 조 (위촉 연령과 기간) ①--- ----- ----- -----,관악 합주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생- ----- -----, -----